

특 허 협 력 조 약
(PATENT COOPERATION TREATY)

발신 : 국제조사기관

수신 :
정성중

대한민국 0673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64 (영동빌딩4층)

PCT

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
통지서

(PCT 규칙 91.3(a) 및 (d))


출원인 또는 대리인 서류참조기호 FP170117PCT	발송일 (일/월/년) 2018년 01월 31일 (31.01.2018)
국제출원번호 PCT/KR2017/010737	답변기간 없음. 다만, 아래 설명 참조
출원인 주식회사 누리바이오	국제출원일 (일/월/년) 2017년 09월 27일 (27.09.2017)

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인에 의하여 제출된 국제출원의 출원서/기타 서류상의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고려하였으며,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:

1. a. 정정을 인정합니다.
 출원인이 신청한 대로
 아래에 기재한 범위에서*:
- b. 정정은 국제조사를 위하여 고려될 예정이거나 고려되었습니다(규칙 43.6의2(a)).
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한 후에 당해 기관에 의하여 정정이 허가되었으므로 그 정정은 고려되지 아니하였습니다(규칙 43.6의2(b)).
2. 다음의 이유로 출원인이 신청한 정정 또는 그 정정의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.*:

이 통지서의 사본 및 출원인의 정정신청서사본을 수리관청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였습니다.

* 정정허가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되는 경우, 출원인은 거부일부부터 2월 이내에, 특별 수수료납부를 조건으로, 국제사무국에 정정신청서, 당해 기관에 의한 거부 이유, 출원인이 제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간단한 의견서를 국제출원과 함께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규칙 91.3(d) 및 수수료 금액에 관하여는 PCT출원인 안내, 제1권, 부록B2(IB) 참조.

ISA/KR의 명칭 및 우편주소
 대한민국 특허청
 (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
 4동 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
 팩스 번호 +82-42-481-8578

심사관
 김선희
 전화번호 +82-42-481-5405

